

2026년 경남 산업안전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경상남도과 (재)경남테크노파크는 경남지역 중소중견기업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2026년도 경남 산업안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 주요 일정 및 유의사항 >

<주요 일정>

신청 · 접수기간	선정평가	협약
'26년 6월 8일 ~ '26년 7월 13일	'26년 7월 ~ 8월	'26년 9월 ~

<2026년 주요내용>

지원유형	구축기간 및 총사업비	지원목표	지원비율
고도화 단계 (중간1 이상)	최대 9개월, 기업당 4억원	4개사	도비 35%, 시군비 35% 자부담 30%

※ 신청가능 지역: 창원, 진주, 김해, 양산

< 경남 산업안전시 구축지원사업 유의사항 >

- 2026년 경남(산업안전분야) 사업계획서 양식 변경에 따라 반드시 확인 필요
- 사업계획서 재해예방 및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시 시스템(솔루션 등) 도입 필수
 - 사업계획서 '1.3.1산업안전 공정개선 목표'는 필수작성
 - * 산업안전시 시스템(솔루션 등) 예시는 [붙임 3. 기술지원사업목록] - 3. 안전보건 재정지원 중 "안전일터 조성지원 지원품목 참고"
- 데이터표준(OPC-UA) 필수 반영
- 스마트공장 구축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반영 필요
 - 사업계획서 1.1. 스마트공장 구축목표에 필수 작성
- 성과지표(KPI) 설정시 안전개선을 지표(안전인증취득, 위험 작업건수) 필수 반영
- 산업안전 자율예방 활동 우수사업장이 『경남 산업안전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 산업안전시 스마트공장시스템 구축
 - 안전센서 설치, AI기반 위험 예지보전, 안전관리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 AI기반 산업안전기능을 추가하여 산업재해 예지보전 방지
- 사업 수행시 필수 의무사항
 - 견학프로그램: 구축 후 기업별 2년간 10회 견학 프로그램 운영(도입기업 전담 인력 1명 이상 배치)
 - 스마트공장 구축 후 홍보물 제작에 따른 동영상 촬영 협조

1.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중소·중견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및 산업재해예방 시스템 구축
 - (지원 대상) AI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도내 4개 시(창원, 진주, 김해, 양산)에 소재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원 내용) 중간1 수준 이상(AI·디지털트윈 기반 실시간 관제, 분석·예측 등)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동시에 산업현장의 위험요소를 실시간 감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남 산업안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안전센서 설치, AI기반 위험 예지보전, 안전관리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 AI기반 산업안전기능을 추가하여 산업재해 방지하는 **산업안전시 스마트공장시스템 구축지원**
 - 기업이 보유한 제조생산·업무데이터 등 대량의 데이터를 AI를 통해 실시간 학습·분석하고, 제조혁신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지원
 - 고도화 수준(중간1)이상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기존 구축 수준이상 달성 필수)
- * (구축전)기초→(구축후)중간1, (구축전)중간1→(구축후)중간 2
* 사업계획서 산업안전 시스템(솔루션 등) 도입 필수
※ 적용사례(예시)

구분	취급품목	구분	취급품목
안전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	안전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음성인식 비상정지 보조 시스템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보건	붕괴·변위 위험 경보시스템
			개구부 덮개 개폐 감지시스템
스마트 통합전도 방지시스템	보건	유해물질 통합안전관리시스템	
화확사고예방 통합모니터링시스템			

□ 지원조건

- (지원 과제) 4개 내외
 - ※ 신청가능 지역: 창원, 진주, 김해, 양산(시군비 매칭이 된 지역만 가능)
- (지원 조건)
 - 지원기간 내 AI공장 구축이 가능한 기업은 도입 예정인 'AI기능'과 '적용 공정'을 선택하여(붙임1 참조) 최대 2억원 내에서 구축 지원

구축목표수준*	지원유형	사업비 구성 (지원금 최대기준)	지원기간
중간1 이상 목표설정필수	기초 → 중간1, 중간1 → 중간2 (동일수준 지원 불가)	도비 35%, 시군비 35% , 자부담 30% 지원금 최대 2.8억원 이내 (도비1.4억원, 시군비 1.4억원)	최대 9개월 이내

※ 구축목표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기준

- *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구축 수준으로 올해 신규 신청하더라도 **"고도화"** 신청이 가능
- *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확인을 받은 기업은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과거 자체적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과 동일하더라도 **"고도화"** 신청이 가능

2. 신청자격 및 기간·방법 등

□ 신청 기간·방법

- (신청 기간) '26년 6월 8일 ~ 7월 13일 17시까지
- ☞ 접수 마감일 17시 이후 신청·제출·수정 불가
 -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마이페이지 - 나의 담당과제 현황」 메뉴에서 과제신청 상태 "제출완료" 확인
 - ☞ 공고 미숙지, 공급기업 미등록 등으로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 (신청 방법) 도입기업·공급기업 컨소시엄 형태로 스마트공장 사업 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신청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신청 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회원가입 필수

- (제출서류) 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

구분		제출서류 목록
공통 제출 (도입·공급 기업)	필수	- 사업계획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정보활용동의서
	필수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22~'24 or '23~'25)
도입기업 제출	해당시	- 중된사업장에 구축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중된사업장 명세" 제출 - 최근 년도('25)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해당시, 직접수출만 인정)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에서 발급 - 가점 증빙 서류(해당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본점과 공장 확인 소재지 시) - 스마트공장 중복성 소명서
	해당시	-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공급기업은 우대가점 해당 시)
공급기업 제출	해당시	-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공급기업은 우대가점 해당 시)

- * 사업계획서 서식은 <https://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 모든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공급기업은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 통한 사전등록 필수

□ 신청 자격

- (도입기업) 도내 4개 시(창원, 진주, 김해, 양산)에 소재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수준 확인 포함) **'기초수준'** 이상으로 확인된 도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 중된 사업장의 경우 중된 사업장별로 신청가능하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중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 ☞ 공고일로부터 협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 및 구축공장이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
 - ☞ 국내 제조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알림 /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 (지원 제외 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 ▷ 휴·폐업중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동일·유사한 사업계획서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 자율형공장, 대중소상생형(AI트랙), '25년 동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붙임2 참조)

-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붙임2 참조)

※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협약 체결 등의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의무사항 (붙임3 참조)**

- 견학프로그램 운영: 구축 후 기업별 2년간 10회 견학프로그램 운영(도입기업 전담 인력 1명 이상 배치)
- 홍보물 제작: 스마트공장 구축 후 홍보 동영상 촬영 협조

3. 추진 및 평가 절차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절차 (붙임2 참고)**

- (요건 검토) 도입기업이 제출한 제출서류, 자격기준 등 검토를 통해 적합과제를 사업계획서 작성 대상으로 선발
- (서면 평가)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지원 적정성 및 도입·공급기업 역량 등 평가
 - * 신청 과제수에 따라 서면평가 생략 가능,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 확인 받은 기업은 서면 평가 면제
- (기술성 평가) 사업계획서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목표·방식, 달성가능성 및 기업역량 등 대면 평가

◦ (현장 확인 및 원가계산)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신청 가점 등의 확인 및 사업비 계상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사업비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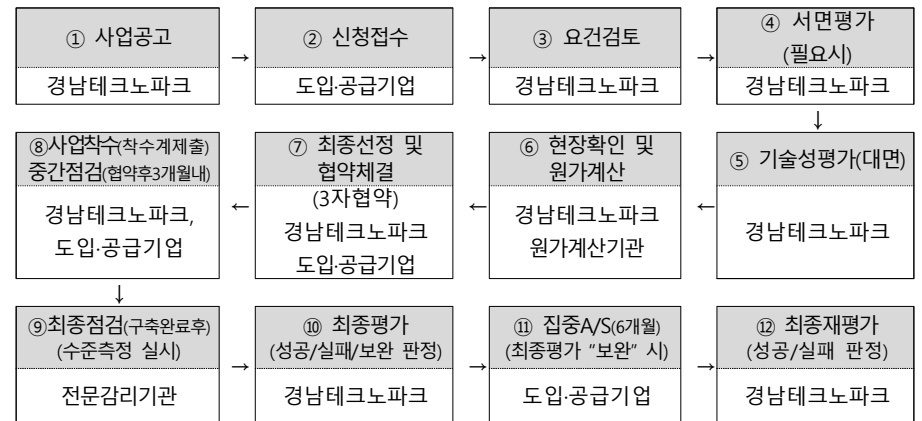
- 신축예정 공장의 경우, 일부 예외 인정*(단, 공장설립(계획)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 검토를 통해 기간 내 구축 가능 여부 확인)

* (예외 인정항목)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 보유설비 정상가동 여부

◦ (최종 선정) 선정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 과제 확정

※ 단계별 평가 일정, 결과 등은 운영기관에서 안내 예정

□ **추진 절차**



* ⑩ 최종평가결과 "보완"인 경우 '⑪ 집중A/S' 및 '⑫재평가' 진행

4. 유의사항

☞ 세부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 및 사업수행

□ **신청·접수 관련**

- (컨소시엄 구성)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함께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온라인 접수
 - 다만,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단독 신청도 가능(필요시 사업종료 후 별도 정밀 정산절차 진행)

- (구축 목표 설정) 기존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
 - 지원유형: 기초 → 중간1, 중간1 → 중간2 (동일수준 지원 불가)
- ※ (이전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 확인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에서 조회 ('20년 이후 구축수준 중 높은 수준을 적용')
- (보안대책 수립) 구축 솔루션 및 설비의 안정성 보장, 기업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솔루션 구축연동 등 보안 대책수립 필수

□ 사업비 편성 관련

- (필수 비용) ①회계 정산 수수료, ②교육비 및 ③기술임치비용을 사업비의 기타 비용에 필수 포함
- ① 회계 정산 수수료: 지정 회계법인의 사업비 상시 모니터링 및 정산을 위한 수수료 필수 편성

<회계정산 표준수수료 현황>

총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공급가액 기준, 천원)	비고
50백만원 이하	455	부가세 제외
200백만원 이하	637	
400백만원 이하	910	
400백만원 초과	1,182	

* 정산대상 사업비(총사업비) : 지원금 + 민간부담금

- ② 교육비: 스마트공장 기술교육(사업관리교육 및 기술교육) 수강 비용 (1백만원) 필수 편성
- ③ 기술임치비 : 'AI공장 구축' 유형 진행 시 스마트공장 구축 결과물의 기술임치비(45만원) 필수 편성

< 기술임치제도 >

- (임치제도) 사업 결과물의 핵심 정보를 보관하여 개발 결과, 보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제도
- (임치효과) 기술임치 시 개발 및 보유사실 시점의 입증과 기술탈취방지, 유지보수 등에 임치내용을 활용가능
- (의무사항)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도입기업은 과제 완료시, 구축 결과물 일체를 2년 이상 기술임치하고, 기술임치계약서와 기술임치증 필수 제출

※ (임치기관) 대조중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02-368-8484,escrow@win-win.or.kr)

- (현물편성)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현금·현물 모두가능)와 도입기업 인건비를 합하여 기업부담금 중 20%(최대 24백만원까지) 내에서 현물로 편성 가능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는 사용 시작일로부터 최대 3년의 비용*을 편성 가능하며, 협약 기간 내에 클라우드 사용을 시작하여야 함
 - * 소기업은 최대 5년 이내 편성가능 하며, 소기업 규모 기준은 [참고] 확인
 - 스마트공장 구축 및 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한 도입기업 인건비 편성 가능
 - *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정산 시 확인 예정

□ 교육 이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도입·공급기업은 “스마트공장 교육”을 이수하고 중간 점검 또는 완료 보고 시 수료증을 필수 제출
 - (교육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 사업처(<https://ssup.kosmes.or.kr>)

<스마트공장 교육 현황>

구분	세부 내용
사업관리교육 (온라인)	- 대상 : 도입·공급기업(대표자 및 임원, 실무자)[총 4명] - 내용 : 사업지침, 부실·부정구축방지교육, 우수사례, 사업비 사용법 등 * 협약 후 중간점검 전까지 수료 후, 중간보고서 제출시 수료증 첨부 - 비용 : 온라인교육 무료수강(https://ssup.kosmes.or.kr)
기술교육 (오프라인)	- 대상 : 도입기업(대표자 및 임원, 실무자)[총 2명] - 내용 : ①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②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 완료보고서 제출 시 수료증 첨부 - 집합교육으로 비용 발생(사업계획서에 교육비 100만원 계상)

* 교육 상세내용 및 일정은 협약 체결 후 추진기관·운영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

□ 기타 사항

- 본 사업의 공고 이외의 사항은 2026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 지침 및 기준'을 따름
 - 단, 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도입기업은 추진기관을 피보험자로 하여 발행, 보증기간은 협약기간에 5개월을 가산하여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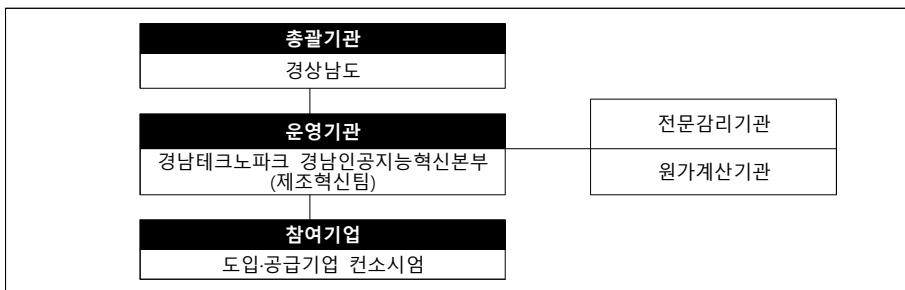
- 사업비 내역 중 기업부담금으로 차지하는 SW개발비에 대한 **이행 (선급금)보증보험증권**(공급기업은 도입기업을 피보험자로 하여 발행, 보증기간은 **협약기간에 5개월을 가산하여 설정**)
-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에 연동하여 구축완료 후 3년간 제출 필요
 - ※ 단,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연 2회(6월·12월) 수기 등록
- 자격·유형·지역 등의 분류에 맞게 신청하여야 하며, 오기재·누락·허위기재 등의 사항 발견 시 평가·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협약 후에도 협약해약 및 제재 조치 등 가능
- 온라인 신청·접수 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담당자의 연락처 오류 여부 필수 확인
- 과제 선정된 기업은 원가계산 시 SW개발비 감증을 위해 원가계산 기관에서 기능요구명세서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5.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2023-80호, '23.8.7)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 관리지침 및 세부 관리기준
 -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 사업 추진체계



□ 담당 기관

구분	주체	역할
총괄기관	경상남도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운영기관	경남테크노파크 경남인공지능혁신본부	- 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 세부관리지침 등 관리 - 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관리 및 평가 등 - 과제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운영, 과제 관리 등
참여기업	도입·공급기업 컨소시엄	- 스마트공장 구축

6. 문의기관

운영기관	문의사항	전화
경남테크노파크 경남인공지능혁신본부 (제조혁신팀)	신청·접수, 사업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055-259-5117/5018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문의사항은 '사업관리시스템 - 전체메뉴(우상단) - 마이페이지 - 고객센터 - SR요청' 으로 문의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http://www.smart-factory.kr>
- 경남테크노파크 누리집 : <http://www.gntp.or.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경남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http://pf.kakao.com/_xaSxgxxb



붙임 1 제조AI 기능별·공정별 지원 안내

□ 제조AI 기능별·공정별 지원 안내

- 제조공정 중심으로 전후방 가치사슬을 나열하고, 공정별 AI 기능을 예시로 정리한 “제조AI 매트릭스”를 사업 지원 시 활용
- 도입기업은 도입할 AI 기능(행) 및 적용 공정(열)을 선택*하여 사업 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과제 지원 시 입력
 - 사업계획서의 AI기능·적용 공정과 동일해야하며, 기술성평가를 통해 일치 여부 확인 예정
- * 차년도 지원 시, 과년도와 동일한 공정·AI기능을 선택하거나, 기술성평가를 통해 동일한 지원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 불가·미선정 처리 예정

< 제조AI 기능별·공정별 지원 예시* >

AI 기능	공정	A. 재무/ 인사관리	B. 제품기획/ 설계	C. 구매	D. 제조공정	E. 물류	F. 환경/ 에너지/안전	G. 사후서비스
1.	인지	계약서 검토	기술 자료 검색	자재 구매 데이터 통합 분석	작업자·동작 감지	드론 활용 재고 추적	현장작업자 자세 위험도 분석	제품 에러코드 판별
2.	예측	채용시스템 운영	시제품 성능 예측	원자재 가격 예측	실시간 설비 이상 예측	실시간 재고·공급 예측	산업용 전력 소비량 예측	고객 리뷰 분석
3.	자동화	ERP 결합 업무 자동화	특허 분석 자동화	자재 수급 최적화	불량 분석 자동화	실시간 물류 제어	공장 에너지 자율제어	예지보전 자동화
4.	소통	챗봇 기반 사내 정보 검색	코드 CD/CI 자동화	자동 발주 추천	디지털 트윈 내 실시간 협업	배송 경로 최적화	AI 기반 안전 점검 AR 챗봇	보이스봇 고객 문의 처리
5.	생성	업무 보고서 생성	신제품 아이디어 생성	수요예측과 협업 최적화	가상 품질 평가	디지털 트윈 기반 물류 창고	탄소배출&환경영향평가 리포트 생성	매뉴얼 제공

* 공정별, AI기능별 세부적인 예시는 [별첨] 제조AI Use-case 참조

붙임 2 동시수행 제한사업 목록

□ 동시 수행 제한사업 목록(기존사업 수행중인 경우)

사업명(지원유형)	2022	2023	2024	2025
- 자율형공장				
-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 대중소상생형(AI트랙)				

※ 음영이 칠해진 해당 연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 26년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과 동시수행 불가
 ※ 단, 협약서 상 구축기간이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 동시 선정·신청 제한사업 목록

26년 사업명	내용
① 정부형 스마트공장 (점프업 및 레전드50+, 지역특화형 포함)	①~⑦ 사업간 동시 수행 불가
② 자율형공장	
③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AI트랙 제외)	
④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⑤ 디지털 협업공장	
⑥ R&D성과확산 스마트공장	
⑦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⑧ 경남 산업안전시 스마트공장	①~⑦ 사업 중 하나와 ⑧, ⑨, ⑩ 사업 동시수행가능
⑨ 제조AI특화(자율형공장 AI트랙)	
⑩ 제조혁신자동화(제조로봇, 제조기반)	
⑪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후관리)	①~⑩ 진행중인 사업과 중복되지 않은 기 구축 스마트공장에 한해 가능(단, 유무상 AS진행 중 신청불가)

붙임 3 **평가 지표**

□ **요건검토**

검 토 항 목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의 상태(계속/휴업/폐업), 사업자의 인적 사항 및 일치 여부, 업종 및 업태 확인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기업규모 및 유효기간 검토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세금 체납·유예 여부 확인
재무제표	·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경제지표 확인
가점	· 산업안전 자율예방활동 우수 사업장, 공급기업 본점 소재지, 인증기업(QC) 여부 확인

□ **서면 평가지표**

평가 항목		배점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30점)	·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 스마트공장의 특성을 적용할 제조공정의 보유 또는 운영할 계획이 있는가?	15
	· 스마트공장 구축 시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가?	15
지원 적정성 (35점)	· 공정개선 및 스마트공장 고도화 목적과 부합하고 있는가?	15
	·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10
	· '데이터에 기반하여 생산공정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지능형공장' 구현을 목표로 하는가?	10
공급기업 역량 (15점)	·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기술력) 및 투입인력(개발PM 등)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15
도입기업 역량 (20점, 정량평가)	· 매출액 증가율	5
	· 영업이익 증가율	5
	· 부채비율	5
	· 수출실적 여부	5
총 점		100

※ (참고) 도입기업 역량 배점기준

항목	배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매출액증가율	12%이상	12%미만~9%이상	9%미만~6%이상	6%미만~3%이상	3%미만
영업이익증가율	10%이상	10%미만~7.5%이상	7.5%미만~5%이상	5%미만~2.5%이상	2.5%미만
부채비율	60%미만	100%미만~60%이상	140%미만~100%이상	180%미만~140%이상	180%이상
수출실적	○	-	-	-	×

* 재무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출액 증가율(1점), 영업이익 증가율(1점), 부채비율(1점) 부여
 * '24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은 매출액 증가율(3점), 영업이익 증가율(3점) 부여
 * '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은 매출액 증가율(3점), 영업이익 증가율(3점), 부채비율(3점) 부여

□ **기술성 평가지표**

평가 항목		배점
도입·공급 기업 역량 (20점)	· 상시 종업원 수, 매출액, 수출액(해당되는경우), 영업이익, 부채비율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	5
	· 도입기업의 자부담비율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확장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5
	·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관련 AI 전문성(기술력) 및 투입인력(개발 PM 등)의 적정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5
	·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과 "지원계획" 등에서 도입기업/공급기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	5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설정 타당성(25점)	·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명확히 제시되었으며, AI 자율형공장으로 해결가능한가?	5
	·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내용"의 범위가 명확하고, "목표수준"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	10
	·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공정별 스마트화 추진 목표"의 내용이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목표수준" 달성에 적합한가?	5
	· 기존 문제점 및 필요성 대비 공정개선 성과지표와 AI목표가 연계되었는가?	5
스마트공장 구축 내용 적절성 (30점)	· "데이터집계 포인트"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자동, 반자동, 수동)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5
	· AI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거나, 구축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수집가능한가?	5
	· AI자율형공장의 구축범위와 AI모델의 유형, 데이터 수집 및 처리방안 등 구축내용이 명확한가?	10
	· "솔루션 기능 구성도"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는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5
	·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연계 등 고도화 계획이 적절한가?	5
	· 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 (구축목표 - 구축내용 - 성과지표 간 내용 연결, 기준수치/목표수치의 근거제시, 지표 계산식 제시, 기대효과금액 등의 적절성)	10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달성 가능성 (25점)	· AI기능에 대한 시나리오 및 검증계획이 적절한가?	5
	· "추진일정 총괄표"와 "산출물 예정 목록"간의 단계가 일치하며, "산출물 예정 목록"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5
	· 정부의 정책방향과 구축업종, 해당 산업에 제조혁신 파급효과가 높은가?	5
가점(5점)	-	(5)
합 계		100

※ 동점 과제는 '①가점 제외한 총점, ②구축내용 적절성, ③구축목표설정 타당성, ④구축목표 달성가능성, ⑤기업역량'의 점수가 높은 과제 순으로 선정

※ (참고) 가점 항목(1개)

구분	항목	세부 내용	제출 서류
1	산업안전 자율예방활동 우수 사업장 (3점)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또는 KOSHA-MS 인증 사업장	신청일 기준 인정 유효기간 내 (인증서 제출)
2	공급기업 소재지 (본사 기준) (3점)	◦ 공급기업(본사 기준) 소재지가 경남 여부	법인등기부 등본
3	추천상품(QC) 지정 (3점)	◦ 도입기업이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지정 제조기업 여부 (2026년 상반기 기준) ◦ 유효기간 확인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지정서

※ 가점 항목당 3점, 최대 5점 가점 부여(최대 2개까지 인정)하며, 사업 신청마감일까지 유효한 서류를 제출한 기업만 인정

□ 현장 확인 항목

확인 항목		확인여부
사업계획서 대조확인	◦ 구축 대상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휴.폐업 등)	적/부
	◦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적/부
	◦ 기 보유설비 이상유무(정상가동 등)	적/부
가점여부	◦ 신청가점 사실여부 확인 및 반영	-

붙임 4 의무사항

□ 견학 프로그램 운영

- (개 요) 경남형 산업안전 스마트공장 견학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업과 학생들에게 스마트공장 현장 이해도 향상 및 벤치마킹 기회 제공
- (주요내용) 중소기업 임직원, 일반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 공장 시범공장 선정 기업 대상 벤치마킹 및 현장교육 실시
- (우수사례 발굴) 기초 및 고도화 스마트공장 구축 진행 시 우수 기업 발굴을 통하여 기업의 자발적 벤치마킹 실시 분위기 조성
- (수행내용) 기업별 2년간 10회 견학프로그램 운영

□ 홍보물 제작

- (개 요) 여전히 기술적 진입장벽과 관련 정보 부족으로 심리적 저항감이 존재하는 레거시 제조업체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관련 온라인 홍보서비스를 실시하여 스마트공장 도입의식 고취
- (주요내용)
 - 경남 산업안전 스마트공장, 패스트 트랙 등 모범적 구축사례 기업을 선정하여 스마트공장 홍보영상 제작 후 경남테크노파크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gyeongnamtp>)을 통하여 배포
- (수행내용) 스마트공장 구축 후 홍보영상 제작에 필요한 촬영 협조

참고1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기준

구분	현장자동화	공장운영	기업자원관리	제품개발	공급사슬관리
고도	IoT/IoS기반의 CPS화				인터넷공간 상의 비즈니스 CPS네트워크 협업
	IoT/IoS화	IoT/IoS화(모듈)화 빅데이터 기반의 진단 및 운영			
중간2	설비제어 자동화	설비제어 자동화	실시간 공장제어	시뮬레이션과 일괄 프로세스 자동화	다품종 개발 협업
중간1	설비데이터 자동집계	설비데이터 자동집계	실시간 의사결정	기술 정보 생성 자동화와 협업	다품종 생산 협업
기초	실적집계 자동화	실적집계 자동화	공정물류 관리(POP)	서버를 통한 기술/납기 관리	단일 모기업 의존
ICT 미적용	수작업	수작업	수작업	수작업	전화와 이메일 협업

참고2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계상가능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5. 부동산업	L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